안양대학교 대학원 학칙

제 2 장 입학 . 등록 . 수업연한

제5조(입학시기) 각 대학원의 입학·편입학·재입학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. 제6조(입학자격)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, 해당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.

①석사과정

- 1. 국내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거나 취득 예정자, 그리고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자
- 2. 외국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해당 대학원 학사 운영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

②박사과정

- 1. 국내·외에서 정규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
- 2. 석사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
- 3.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- ③신학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6조 제①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, 수세 후 3년 이상 된 자로 본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교단의 목사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.[개정 2013. 3. 1]
- ④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6조 제①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직 교 원에 한 한다. 다만
 - 1. 교원자격증소지자로서 현직 교원이 아닌 자는 자격증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다.
 - 2.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하는 전공은 전항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 - 3. [삭제 2013. 3. 1]
- ⑤본교의 전임교원은 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. 다만, 학문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- **제7조(지원 절차)** ①대학원의 각 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입학지원 절차에 따른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입학지원 절차에 따른 세부 사항은 「입학에 관한 규정」으로 정한다.
- 제8조(입학전형) ①대학원의 입학전형은 다음 방법 중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 - 1. 일반전형

- 2. 특별전형
- ②입학전형에 따른 세부사항은 「입학에 관한 규정」으로 정한다.
- **제9조(재입학, 편입학)** ①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당해 학기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- ②타 대학원을 졸업하였거나 또는 재학 중에 있는 자가 편입학을 지원할 경우에는 정원 내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- ③편입학 자격은 타 대학원 동일 또는 유사 전공과정에 재학, 또는 수료한 자로 한다.
- 제10조(재외국민 및 외국인)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재외국민 및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게는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규정은 「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」으로 정한다. [개정 2013, 3, 1]
- **제11조(등록)** ①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 기일 내에 소정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
- ②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등록에 관한 규정」으로 정한다.
- 제12조(조건부 등록) 학칙 제28조 ②항 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대학원장이 특별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학기의 유예를 주어 조건부로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.
- 제13조(수업) ①일반대학원 수업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필요시 야간수업을 운영 할 수 있다. 특수대학원 수업은 야간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전일제, 계절제로 운영할 수 있다.
- ②매 학기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으로 한다.
- ③원격 강좌 프로그램으로 학점을 부과할 수 있다.
- **제14조(수업연한 및 재학연한)** ①각 대학원의 과정별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<별표2>와 같이 한다. 다만, 교육대학원의 경우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교육대학원장의 제청과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. [개정 2013. 3. 1]
- ②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 설치된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.
- ③특별한 사정이 있어 재학연한을 연장할 경우는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,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